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신설기구 평가 결과, 학교통일교육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24조 제2항 및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, 정착지원과 업무 중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업무내용을 추가하며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내 업무조정, 남북출입사무소 신규업무 반영,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내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5. 7. ~ 5. 18.)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·운영

제19조제3항제4호 중 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”를 “보호대상자의 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총괄·조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15.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

제19조의2제4항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호(종전의 제10호) 중 “재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”을 “유관기관과의 협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

10.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

15.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

제19조의3제3항제14를 “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문화공간 조성·운영 및 남북간 행사지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4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식당·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

7. 재난안전관리

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0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인도협력국) ① ~ ⑤ (생략)	제8조(인도협력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17. (생략)	1. ~ 1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8.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 · 운영</u>
제19조(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) ① · ② (생략)	제19조(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</u>	4. <u>보호대상자의 교육 · 취업 · 주거 · 의료 등의 지원을 위--</u> ----- <u>협조 총괄</u> <u>· 조정</u>
5. ~ 14. (생략)	5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5.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</u>
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5.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</u>	<u><삭 제></u>
<u>6. (생략)</u>	<u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

7. (생략)

⑤ 삭제

⑥ (생략)

제19조의2(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
사무소 화천분소) ① ~ ③ (생
략)

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9. (생략)

10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
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
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

11.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

12. (생략)

13. (생략)

14.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

<신설>

15. · 16. (생략)

⑤ 삭제

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2(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
사무소 화천분소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
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

10.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
무

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12. -----
----- 유관기
관과의 협조

<삭제>

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
<삭제>

15.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
정신건강 관리

16. · 17. (현행 제15호 및 제16
호와 같음)
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3(남북출입사무소) ① ·	제19조의3(남북출입사무소) ① ·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경의선 출입시설 <u>안의</u> 남북 간 행사지원	14. ----- <u>안의 문화</u> <u>공간 조성 · 운영 및</u> -----
15. ~ 27. (생 략)	15. ~ 27. (현행과 같음)
④ 삭 제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4(한반도통일미래센터)	제20조의4(한반도통일미래센터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식당 · 숙박시설 및 보건실</u> <u>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</u>	<삭 제>
10. ~ 13. (생 략)	9. ~ 12. (현행 제10호부터 제1 3호까지와 같음)
14. (생 략)	13. (현행 제14호와 같음)
⑤ 삭 제	
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<u>식당 · 숙박시설 및 보건실</u>

<u><신 설></u> 6. (생 략) 제24조(평가대상 조직) ① (생 략) ② 「<u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</u>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10과 같으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「<u>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	<u>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</u> 7. 재난안전관리 8. (현행 제6호와 같음) 제24조(평가대상 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-	---